

총체적 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농민연대 요구사항

1. WTO/DDA 농업협상 · 쌀 개방 반대
2. 통일대비 쌀 자급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3. 농업 · 농촌살리기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추진 중단 및 DDA 농업협상 이후 재논의
5. 상호금융부채를 포함한 농가부채특별법 개정
6. 신경분리 조기이행 등 근본적인 농업협동조합 개혁 추진
7. 재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8.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직불제 확충과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9.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복지특별법 조기 제정
10.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및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1 WTO/DDA 농업협상 · 쌀 개방 반대 관철

(1) 현황 및 문제점

이번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에서 기존의 농산물 수출국-수입국간 대결 구도를 대신한 농산물 수출 선진국-개도국간 대립 구도로 급속히 재편되었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EU와의 공조체제 붕괴에 대응하여 NTC를 중시하는 10개국 연합체(G-10)

을 통해 대응했으나, 미국 및 EU-농산물 수출개도국간의 대립 구도 속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미국 및 EU-농산물 수출개도국들의 주도로 관세 상한 설정, 의무수입쿼터물량(TRQ) 증량, 스위스공식(고관세율 품목의 급격한 관세 인하 초래) 혹은 최저관세율(5% 이하) 적용 품목 확대 품목별 AMS 상한 설정, 전체 국내농업보조금에 대한 감축 등을 골자로 한 각료선언문 초안(조지아 위원장 초안)이 발표되었다. 칸쿤 각료선언문 초안에서 한국·일본 등 농산물수입국의 요구사

향은 개도국 특별품목(SP)를 제외하고는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비록 칸쿤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문 채택이 무산되었지만, 미국-EU 및 농산물 수출개도국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칸쿤 각료선언문 초안을 향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의 협상 여건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4년 쌀 재협상의 결과에 따라 농민들의 주 소득원이자 국민들의 핵심 식량에 대한 기반 붕괴와 만성적인 식량부족국가로 전락되어 국가안보마저 우려될 상황에 처해 있다. 쌀 재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는 마치 쌀 추가개방은 어쩔 수 없는 사실로 치부하면서 협상도 하기 전에 쌀 포기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2) 요구사항

향후 협상에서 미국과 EU의 요구대로 타결된다면 우리 농업은 몰락할 것이 자명하며,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은 반드시 협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우리 농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칸쿤 각료선언문 초안(조지 여 위원장 초안)에 대해, 정부는 분명하고도 일관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통령 및 정부 관료들부터 농업 보호와 희생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정부는 민족의 생명줄인 농업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재정립하고, 농업 보호와 희생을 위해 WTO 및 각종 FTA 등 무분별한 개방농정 기조를 철폐해야 한다.

2004년 쌀 재협상에서 쌀 관세화 유예 및 의무 수입물량(MMA) 확대를 반대해야 한다.



2 통일대비 쌀자급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1) 현황 및 문제점

식량자급률은 약 30% 대에 머물고 있고, 콩·밀·옥수수 등의 기타 식량작물은 이미 97% 이상이 수입개방으로 인해 자급률이 현저히 떨어져 쌀을 제외하면 약 7%의 자급률에 그치므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상황은 매우 불안한 실정이다.

카길, ADM, 콘아그라, 콘티넨탈그레인 등 다국적 곡물메이저들의 시장지배력 확대로 인해 세계 식량지배가 이뤄지고 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간의 화해·협력의 진전에 따라 쌀을 매개로 한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확고하다면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간 경제교류협력과 민족차원의 식량안보라는 점을 분명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한 내 과잉 쌀재고 해소를 위한 대북 쌀지원이 2002년 말 성사된 이후 남북한 화해·협력의 틀이 공고해졌다. 이는 대북 경제협력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식량주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2002년 및 2003년의 대북 쌀 지원은 북핵 파동 등 한반도 주변 정세 악화 및 긴장·경색관계를 다소나마 완화시켰으며, 남북한간 화해·협력 및 평화기조 유지에 있어 효과적인 지렛대로 작용하였다.

현재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비료 지원과 농자재 지원·농업기술 교류·

공동생산 추진 등의 사업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실질적인 남북한 농업협력 추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북한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 및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남북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법 및 종자(유전자원) 등에 관한 남북한 농민·학자·관련 전문가들의 공동 연구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2) 요구사항

식량자급목표를 법제화하고 농가소득보장을 위한 쌀산업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 및 재난을 대비하여 전체 식량자급을 단계적으로 목표 제시하고, 쌀 자급을 100%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생산기반 발전을 위한 투자, 농가소득보장 제도의 확대, 쌀 소비기반 확대 프로그램, 남북 농업교류협력, 수매제유지, 민간유통 활성화, 쌀 생산비의 절감, 재원 확보 동원 등 식량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득 보전직불제는 감축대상 보조로서 추가적인 소득 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직접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소득지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허용보조방식으로 생산비연계 소득지지, 농가소득안정화를 위한 직접지불, 자연재해보상을 위한 직접지불, 낙후농촌개발에 대한 직접지불, 노령은퇴농가의 경영이양을 위한 직접지불 등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쌀산업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 농림부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양곡유통위원회를 해체하고 양곡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양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남한 내 과잉농산물 재고 해소를 통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다양한 잉여농산물 대북 지원이 정례화·제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농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북한 농업의 생산성 증대와 자생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 농업 환경 및 현실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중장기적인 남북한 농업의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통일농업 시대를 대비한 남북한의 공동 연구 및 교류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이다.



3 농업·농촌살리기 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

(1) 현황 및 문제점

올해 9월에 개최된 WTO 농업협상은 개방을 둘러싼 우리나라 농업의 긴박한 상황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개방여부를 떠나 현재의 우리나라 농업 여건으로만 보더라도 생산과 소득 구조가 매우 취약해 농업재생산 구조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획기적인 농업 대책과 장단기 계획 없이 임시방편적인 처방만 내놓고 있다.

선진국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국가안보에서 식량의 중요성 때문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농업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우리 농업은 생산이 영세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

자와 더불어 농가소득보조를 통해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

지난 YS정부 때 실시한 농어촌구조개선과 농특세의 총 사업비 52조 3,275억원 중 국고보조는 22조 217억원이며, 용자 중 이차보상액은 1조 2,254억원 이었다. 이에 따라 이를 더한 직접투자분은 23조 2,471억원으로써 전체 사업비의 44.4%에 불과하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국고보조 중 농업인에게 직접 보조한 금액은 2조 6,386억원으로써, 전체 투융자사업 자금의 5.7%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SOC 및 공공부문에 보조되었다. 생산자단체 지원 및 용자금액의 이차보상액을 감안하면 4조 7,754억원이 농업인의 소득지원으로 투자됨으로써 전체 사업비의 10.3%에 불과했다. 1999년부터 시행된 45조 투융자사업의 경우에 개별 농민에게 주는 보조금이 용자로 전환됨으로써 기존보다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축소되었다.

각 사업부문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생산기반 및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반면 농업소득은 감소되었다. 개별경영체 육성자금이나 후계인력 육성인원 및 지원자금이 점차 축소됨으로써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이 축소되었다.

농특세 사업의 소관부처가 복잡하고 본래 취지에 맞는 용도로 쓰이지 않고 타 용도로 쓰이기도 하였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및 개선사업의 경우 내무부,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등이 주관하고 있으며, 중복투자로 자금운용의 효율성 및 사업성이 떨어졌다.

(2) 요구사항

농업회생을 위한 농업·농촌 투융자사업을 추

진해야 한다. 실질적인 농업경쟁력 확보와 전면적인 농어촌복지대책을 확립하기 위해, 현행 예산과 별도 편성하여 확보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육성, 농민 경영안정 지원, 생산의 조직화를 통한 농산물가격 안정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2004년으로 끝나는 15조 농어촌특별세 사업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매년 1조 5천억 원씩 2005년~2010년까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타부처 사용금액에 대한 평가 및 조정기능 확립으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기존 농특세 운용실적을 전면 재검토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투자에 한정하고 농림부가 직접 관장해야 한다.



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추진 중단 및 DDA농업협상 이후 재논의

(1) 현황 및 문제점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에서 줄속으로 체결한 한-칠레 FTA를 '대외신인도 하락, 한국 상품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의 근거만을 제시하며 이번 정기 국회 회기 내 국회비준을 강행 추진 중이다. 품목별로 상이한 관세체계를 지닌 우리나라와 단일관세 형태를 지닌 칠레와의 FTA 발효시, 향후 DDA 농업협상 및 2004년 쌀 재협상에 있어 관세상한 설정 관세하락 속도가 빠른 스위스 공식의 적용 등 관세감축 방식 결정 등에 있어 우리나라의 입지가 좁아질 우려가 매우 크다.

정부는 자체 추진한 한-칠레 FTA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7년간 1조 2천억원 규모

의 'FTA 후속대책'을 마련하였지만, 부정확한 피해 예측만을 근거로 하였다. 정부의 정확한 한-칠레 FTA 관련 피해 분석 및 조사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액 산정 및 정책시행 효과마저 불투명하다. 농업의 특성이 특정 작목의 붕괴가 타 작목의 과잉으로 이어져 모든 농산물의 가격을 폭락시켜 농업 전반에 피해가 확산됨에도 과수 몇 품목에만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이다.

(2) 요구사항

한-칠레 FTA의 국회비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DDA 농업협상 이후에 재논의해야 한다.

5 상호금융부채를 포함한 농가부채특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농가부채특별법 자금 중 상호금융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가 여전히 높아 농민들의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제약하고 있으며,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또 다시 대출을 받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체 농가부채특별법 자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호금융대출은 농가부채특별법에서 총 7조9,974억원을 지원(5년 후 상환)받았으나, 6.5%에 이르는 고금리는 농가가 매년 5,198억원의 이자를 5년 동안 지급해 총 2조5,992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001년 농가부채특별법

15조 원 중 8조원에 이르는 자금으로 전체 부채대책자금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율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농가의 경영압박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농가부채특별법 개정 입법예고에서는 정책자금을 제외한 상호금융과 경영개선자금에 대해서는 제외되어 있어 이들 자금을 포함한 단기간의 부채경감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농업생산의 지속불가능, 농촌경제의 파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 요구사항

농가부채는 농업소득 과소에서 발생하므로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각종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열위에 농일 수밖에 없는 농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사회지원책(직접지불제도,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번 농가부채특별법 개정 입법예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책자금의 금리를 연동금리에서 1.5%로 확정하고, 연대보증 피해자금의 금리를 3%로 인하해야 한다. 상호금융 대체자금과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를 현행 6.5%에서 3%로 인하해야 한다.

영세한 농업생산구조와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나라는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신규 대출 정책자금의 금리를 현행 4%대에서 1.5%로 인하해야 한다.

농업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가의 자율에 따라, 부채농가의 자산을 정부가 취득하고 처분농가에 대해서는 이용권을 부여해 영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기

간 후 자산을 채취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모든 연대보증을 농신보로 대체할 수 있도록 농업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해야 한다.

연체자금에 대한 지연금리를 일반금리의 3%까지 적용해야 한다.

농가과산시 연대보증인을 면책시켜 주어야 한다.

6. 신·경분리 조기이행 등 근본적인 농업협동조합 개혁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입법예고안에는 농협중앙회장 비상임 전환, 사업연합회 도입 등이 관철되었으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시한이 명시되지 않고, 세부 개혁과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흡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경분리와 관련, 3년 이내 신경분리를 하도록 하고, 중앙회는 비사업적 기능으로 전환하여 현 농협중앙회를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으로 완전 분리 할 것과 신경분리추진위원회를 조직 성격에 맞게 신경분리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재편해야 한다.

(2) 요구사항

농협 개혁 완수를 위해 관련법안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농협법 개정을 통해 전국농민 연대의 농협 개혁안이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신·경

분리, 시군지부 폐지, 도지역본부장 선출 등 농협의 조직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주요 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사업과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농민조합원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 농기계·농약·비료·농자재 등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지역농협의 자체 구매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농협 자회사에 대한 회원조합의 참여 및 감독·감사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지도사업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도사업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한 경제·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농민조합원 중심의 실익 증진에 부합하는 농협 조직체계의 완성과 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 정부 및 지자체 등 관련 조직들의 유기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경제·지도사업 활성화를 앞당겨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조합원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보완 및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각종 시설의 유지·확충 등 하드웨어적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지역 브랜드 개발 및 육성·작목반 등 기초생산자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의 마련 및 추진이 요구된다.

7. 재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현황

(단위 : ha, 동, 천마리, 개소)

농작물 도복 및 침수		과실낙과	비닐하우스	인삼시설	축사	가축	농경지	수리시설
벼	밭작물							
25,975	12,011	34,987	2,385	94	1,616	692	5,068	3,317

※ 자료 : 농림부, 2003. 9. 21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농업재해는 갈수록 심해지는 반면, 정부의 이에 대한 대책은 사후대책 중심의 생계구조적 지원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농어민들의 안정적 영농·영여활동이 어려우며, 영농·영여의욕도 심각하게 감퇴되고 있다.

계속되는 우기로 인해 올해는 평년보다 1.9 정도 기온이 낮았으며, 일조시간도 75%수준에 그쳐 각종 냉해 및 병충해 피해가 심각하다. 벼 냉해 피해는 2003.8월말 현재 전국 6천여ha, 전북 남원을 비롯하여 순창, 진안, 무주, 장수 일대 4천여ha에 집중적인 피해를 보았다. 병충해피해는 2003.8월말 현재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벼멸구, 흰등멸구 등 45만여ha에 이른다.

제 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경제적 손실규모는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농업피해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모든 농작물에 대해 적용하기에는 기술상의 한계가 있다.

(2) 요구사항

정밀한 피해조사를 통해 극심한 재해지역을 즉각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가들의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냉해 피해를 입은 지역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특히, 쌀 생산의 경우 예년에 비해 10%이상 감소하고 미질이 하락하여 농가소득 감소분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농업재해보상법(가칭)」 수립을 통해 각종 농업재해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비현실적인 피해규모 기준을 철폐하며 국가의 지원범위 및 내용을 확대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가 이전 5년간의 생산량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생산량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피해의 70% 이상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저수지 준설, 논밭 등에 대한 관개시설의 확충과 현대화를 비롯한 수리시설 개선 등 근본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직불제 확충과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전세계적으로 소득보장을 위한 직불제 예산 대폭증가 및 대책 수립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농업개방론을 앞세워 충분한 농림예산

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는 생산자율계약지불제, 품목별수입보험제도 등이 있으며, 캐나다에는 순소득안정계정, 일본은 도작경영안정제 등이 있다.

미국은 신농업법과 2003년도 예산을 통해 농가 품목별지원 및 소득지지, 연구, 식량지원 등 각종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735억달러 추가예산을 배정하고 부족불제도 성격의 반순환직불제를 부활하였다.

대만은 직접지불제의 강력한 추진과 함께 수매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농가소득을 확고히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다양한 직불제 실시 및 소득안정화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2) 요구사항

전세계적인 농정 추세에 맞게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소득보장안정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양곡수입이나 관세수입 전액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쌀가격 및 쌀농가소득안정기금 등을 신설해야 한다. 고령농가 및 은퇴농가에 대한 연금확대, 생활소득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쌀농가 정책자금

및 상호금융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국내식량원조, 소득보험, 소득안정화 계획 등 각종 보조금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고품질 쌀 생산집단 장려직접지불을 실시해야 한다.

누적 쌀 AMS 감축액을 직불제 예산으로 투입해야 한다. 1995년 에는 20,343억원 2002년에는 15,097억원으로 AMS 누적감축분은 5,996억원에 이른다.

농업직불제를 ha당 선진국 수준(미국 예 : 100만원~120만원/ha, 2001년 기준)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농업직불금을 지주가 아닌 실제 경작자가 지급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규모 예산의 연차인상을 법률 명시로 안정적인 제도시행과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생산중립적 직접지불제를 확대해야 한다. 경영이양 직불제 및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현실적인 단가 인상을 해야 한다. 미국의 생산자율계약제도, 유럽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일본의 중산간직불제 등과 같은 국내농업실정에 맞는 허용보조정책을 수립하고 확대해야 한다.



조건불리지역으로 국한된 것이 아닌 일정 조건의 밭농업 전체를 대상으로 밭농업직불제를 실시해야 한다.

2002년 이후 농가 실질소득 하락에 대한 정부 보전을 실시해야 한다. 휴경을 전제한 생산조정하의 직불제(BLUE BOX)와 논농업직불제(GREEN BOX)를 포함한 직접소득 보전이 80%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 세금감면 학자금지원 의료 지원 방식 등 간접소득 보전을 20%이상 실시해야 한다.

9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복지특별법 조기 제정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농어촌은 인구의 노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이농 증가, 농산물가격 폭락 등으로 인한 농가 경제의 악화, 소득불안, 열악한 교육·의료·서비

스 등 생활환경의 도·농간 격차심화로 인해 농어촌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농어촌은 도 농간 소득 및 복지수준 격차 심화와 농업에 단순한 시장경제논리 도입 의도가 거세지고 있어 농어촌 자체가 퇴보 사장되어 가고 있다.

복지 선진국은 이미 농업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적 가치를 뛰어넘어, 농어촌·농어민문제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촌·농민복지와 관련된 다각적인 사회정책 및 제도 등 새로운 형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농촌회생대책 마련과 함께 획기적인 농어촌복지대책으로서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며, 소득보장을 위한 경제 정책과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수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요구사항

정부 부처가 단일한 농어촌복지특별법을 조기



에 제정하고 명확한 예산을 확보해 과감한 복지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및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1981년 제정된「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2001년 현재 급식대상 학교 10,109개의 학교 중 87%인 8,807개 학교에서 총 8백4만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실시(학교급식 69%, 위탁급식 31%)하고 있다. 학교급식 관련 예산은 연간 1조6,750억원(2000년)이며 이중 학부모부담이 1조3000억원(77.6%), 교특회계예산이 3,354억원(20%), 자치단체기타 366억원(2.2%), 급식후원금 30억원(0.2%) 등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짧은 시간에 양적으로는 급성장했으나 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학교급식 납품재료의 최저가원칙만이 강조됨에 따라 급식재료가 저급 농산물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로 채워지고 있어 잦은 식중독 사고의 발생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기피하여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학교 인근의 서구식 인스턴트식품을 매식하여 오히려 나쁜 식습관을 형성하고 있다.

더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수입농산물 물이 학교급식을 잠식하여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은 대통령의 농정공약이었으나, 정부와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학교급식재료를 자국산만 사용토록 강제화하고 있으며, 일본도 학교급식재료를 유기농산물, 오리쌀 등 최고품질로 공급하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국에서 자체적인 학교급식법 조례 제정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나 행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전국 시·군 단위별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전남 나주에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학교급식 개혁과 우리 농산물 이용을 위한 전남운동본부'는 5만명 도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급식 조례안을 전남 도의회에 통과시켰다.

(2) 요구사항

우리 농산물 소비확대 및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 학교급식의 문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통해 좋은 영양을 공급하고 농축산물의 수급과 농업 보존 및 식량안보와도 맞물려 있는 국가적 사안이다. 학교급식을 제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민농연**